

이 보도자료는 배포와 동시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부산지방검찰청
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이영규  
전화 051-606-4164

## 보도자료

2023. 6. 8.(목)

### 제목

**부산지방검찰청 사법질서방해 무고사범 엄정 대응  
- 5개월간 무고사범 총 12명 적발 -**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「무고」는 선량한 시민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, 부산지방검찰청은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'23. 1. ~ 5. 까지 무고사범 총 12명을 입건하여 기소(구속 기소 1명, 불구속 기소 11명)하였음
- 부산지검은 '22. 9. 10.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(이하 '수사개시규정'이라고 함)」이 개정되어 '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'에 무고·위증 등 '사법질서 저해범죄'가 포함됨에 따라 무고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, 무고사범을 전년 동기('22. 1. ~ 5.) 3명에서 대폭 증가한 12명을 인지하였음
- 검찰은 앞으로도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, 특히 상습, 음해성 무고행위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등 엄벌할 방침임

## I

### 사범방해 범죄인 무고죄의 문제점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

- 「무고」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, ‘수사나 재판’을 받게 된 피무고자는 나중에 혐의가 없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임
- '22. 9. 「수사개시규정」이 개정되어 ‘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’에 무고·위증사범인 ‘사법질서 저해범죄’가 포함되어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고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함
- 그 결과, 부산지검은 '23. 1.~5. 동안 무고사범 12명을 적발하여 기소 (1명 구속 기소, 11명 불구속 기소)함
  - ※ '22. 1.~5. 무고사범 3명 입건, 작년 동기대비 300% 증가

## II

### 무고사범 주요 수사 사례

####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, 공무원을 무고한 사례

-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수사한 근로감독관 까지 허위 고소·진정한 사례(ㄱ〇〇, 62세, '23. 1. 구속 기소)
  - 피고인이 운영한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고, 위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허위로 수사 보고를 작성하고 진정서를 가짜로 만들었다고 허위 진정
-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(ㄴ〇〇, 60세, '23. 3. 불구속 기소)
  - 피고인이 사실 피해자 부부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,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 고소하여 피의자를 무고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

- 폭행으로 신고당해 구속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(ㄷ○○, 52세, '23. 4. 불구속 기소)
  -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했음에도,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

###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무고한 사례

- 매월 5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前회사직원을 상대로 1년간 3차례 허위 고소한 사례(ㄹ○○, 74세, '23. 5. 불구속 기소)
  - 피고인의 회사 경리직원이 오피스텔 분양대금 정산업무를 완료 하였음에도 수년이 흐른 후 갑자기 경리직원을 찾아가 '내 덕에 살고 있으니 매월 50만원 씩 내놓으라.'라고 요구하였고, 이를 경리직원이 거절하자, 경리직원이 마치 분양대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 고소
  - 경리직원이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분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자 피고인은 위 서류마저 위 경리직원이 위조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하는 등 1년간 3차례 허위 고소
-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(ㄱ○○, 54세, '23. 5. 불구속 기소)
  -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회사 자금 20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아 피고인 명의 주택에 대하여 피해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,
  -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제기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, 피고인은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'처음부터 배우자가 문서를 위조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.'라고 배우자를 상대 허위 고소

## 성범죄 사건에서 성관계 당사자를 무고한 사례

- 합의하여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성매수자를 성폭력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(비○○, 49세, '23. 3. 불구속 기소)
  - 모텔에서 성매수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'성폭행을 당했다'라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, 출동한 경찰관에게 '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, 폭행당했다'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

### Ⅲ 향후 계획

- 「무고」는 죄 없는 피무고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, 검찰은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고, 특히 상습, 음해성 무고행위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벌할 방침임